

1. 폐지이유

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(‘22.6.10. 개정)의 시행(‘23.6.11.)으로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「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을 폐지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716, 2021.5.24.) 고시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344호

「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 폐지안

「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716호, 2021.5.24.)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